

Legislative & Policy Weekly

세종Law *Focus*

주간 입법·정책 동향

Vol.254 | 2024.09.30. (2024.09.23~09.29)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2. 입법(행정)예고 법안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상임(특별)위원회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09.23~09.29)

Contact: 백대용 변호사(파트너)

02-316-4630, 010-3248-5382
dybaek@shinkim.com

Summary

【정부의 주요 정책】

<법무부>는 「**신(新) 출입국·이민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매년 필요한 적정 비자 규모를 사전 공표하여 국민 일자리 침해 우려를 해소하고 무분별 유입에 따른 갈등을 예방하는 것을 전제로, 산업계 구인난과 지역소멸 위기에 따른 이민 확대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수인재 유치 문호 확대, 지자체·경제계 수요 선제적 반영, 과학적·체계적 외국인력 도입시스템 구축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일산신도시 기본계획**」을 공개하였습니다. 일산 신도시를 마지막으로 1기 신도시 5곳의 밀그림 공개가 완료되었으며, 총 30만호 규모로 계획된 1기 신도시가 약 54만호 규모로 탈바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본계획(안)은 호수공원, 문화공원 등으로 대표되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지하면서,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고 주거·일자리·문화 등 융복합 도시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도시공간 구상계획도 제시하였습니다.

【입법(행정)예고】

<국무조정실>은 규제 특례 제도 운영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 및 의견제출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여 부처간 이견 발생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규제 특례 운영에 필요한 통일된 업무처리절차의 범위와 내용을 정하는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환경부>는 재활용 기술 및 시장 발전에 따라 시중에 판매 중인 대부분의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이 가능하게 되어 안전한 처분(폐기물부담금)에서 재활용(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으로 정책적 전환하기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여객공항사용료 징수 범위를 공항을 사용하려는 자로 확대하고 공항사용료가 포함된 항공권을 구매한 국민이 항공기 미탑승으로 공항시설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구매자가 여객공항사용료의 반환을 5년 이내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기간 내 반환 청구가 없는 여객공항사용료는 국고에 귀속되도록 규정하는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외부 포장에 대한 상세 기재·표시 기준을 정하고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의 지정 해제·변경 신청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영업 등록 등의 민원사무에 전자적 방식의 증명서를 도입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개선하며 최근 화장품을 표방하며 인체 내 주사 등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사용법의 표시·광고에 대한 소비자 안전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관련 영업자의 준수사항과 그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법률 발의 및 제출안】

현행법의 이사의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에 더해 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특정 주주나 이해관계인이 아닌 총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변할 의무를 부과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0인)**」 ,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경우 예치금과 같이 상계·압류를 금지하도록 명시 규정하여 이용자에게 가상자산이 우선 지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2인)**」 ,

현행 상속세율을 인하하고, 상속공제 중 배우자 상속공제와 일괄공제 금액을 확대하며, 가업상속에 대한 공제요건을 완화하고 최대주주 등의 상속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하는 등 가업승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등 11인)**」 ,

조치의무사업자에게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법촬영물 등이 유통되는 경우 그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의무에 더해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를 추가 부과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3인)**」 ,

정부가 주도적으로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여건을 조성하도록 근거를 수립하는 한편, 인재 육성 전략의 수립 및 민간 주도의 핵심기술 발굴 지원 등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신뢰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우영의원 등 19인)**」 ,

모든 국민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안전하고 올바르게 누릴 수 있는 법적·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디지털포용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관련 산업과 기술의 육성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디지털포용법안(김장겸의원 등 10인)**」 ,

수출 대상 국가에 전쟁 또는 사변이 있을 경우나 수출 대상 국가가 조약과 국제법규에서 정한 우리나라의 권익을 인정하지 아니할 경우에 방위사업청장이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도록 하여 방산물자 등의 수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형의원 등 17인)**」 ,

간판 등 광고물에 대해서는 건물 층수나 크기와 관계없이 외국어로만 표기할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0인)**」 ,

대한민국 원자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전력 공급 및 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원자력의 대내외적인 주권을 확립하고 산업의 수출 확대를 통하여 대한민국 전체 산업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원자력산업 발전 지원 특별법안(고동진의원 등 13인)**」 ,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대규모점포 등에 대하여 반드시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의무휴업일 지정을 명하도록 하고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0인)**」 ,

반도체산업 전반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확대하고, 반도체 관련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기반시설 구축, 전문인력 지원, 기술보호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자 하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정진욱의원 등 24인)**」 ,

화장품의 용기,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제품의 상세한 정보를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의원 등 10인)**」 ,

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생활화학용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생활화학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고,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생활화학용품 사용으로 예상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구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생활화학용품 피해배상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이언주의의원 등 10인)**」 ,

공공기관 발주에만 적용되는 공사대금지급시스템을 민간 발주 공사에도 확대하여 하도급대금과 임금 체불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고자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의원 등 19인)**」 ,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으로서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인가 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감면하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등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국회의사일정(안)】

<법사위>는 검사(박상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10/2), <과방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청부민원과 공익신고자 탄압 등에 대한 진상규명 청문회(9/30)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농해수위>, <환노위> 등은 국정감사계획서 채택 및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바로가기](#)

- 「신(新) 출입국·이민정책」추진(법무부) 7
- 「일산신도시 기본계획」공개(국토교통부) 8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바로가기](#)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행정안전부) · 10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 11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 11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해양수산부) 11

2. 입법(행정)예고 법안

[바로가기](#)

-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무조정실) 12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환경부) 12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환경부) 13
-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환경부) 13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부) 14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15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15
-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식품의약품안전처) 16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바로가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0인) 17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등 10인) 17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2인) 18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등 11인) 18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의원 등 11인) 19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의원 등 13인) 19
-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신뢰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우영의원 등 19인) 20
- 디지털포용법안(김장겸의원 등 10인) 21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형의원 등 17인) 22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0인)	22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의원 등 10인)	23
• 원자력산업 발전 지원 특별법안(고동진의의원 등 13인)	24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0인)	25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의원 등 10인)	25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의원 등 11인)	26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정진욱의원 등 24인)	26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의원 등 12인)	27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의원 등 11인)	28
•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허종식의의원 등 11인)	28
• 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김원이의의원 등 26인)	30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의원 등 10인)	31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의원 등 13인)	32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의원 등 10인)	32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의원 등 10인)	33
• 생활화학용품 피해배상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이언주의의원 등 10인)	33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의의원 등 10인)	34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등 11인)	35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	35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의원 등 19인)	36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의원 등 17인)	36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37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5인)	37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바로가기](#)

1. 상임(특별)위원회	38
--------------	----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바로가기](#)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53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39
--	----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09.23~09.29) [바로가기](#) 42

- [ESG] 생물다양성 뉴스레터-3. TNFD 공시 현황 및 사례: 국내 기업의 생물다양성 관련 핵심 준비 사항
- [에너지·자원]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서의 전력 직접거래 등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
- [ESG]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준비 - 7. 한국거래소, 코리아 밸류업 지수 발표
- [금융] 은행 및 금융지주 금융규제 주간 브리핑 - Vol.3 (2024년 9월 3,4째주)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부	「신(新) 출입국·이민정책」추진 - (우수인재 유치) 톱티어 비자, 청년 드림 비자 등 새로운 비자제도를 통해 우리 사회에 필요한 우수인재를 선제적으로 확보 - (지자체·민간 참여 확대) 광역형 비자 도입, 지역특화형 비자 및 농어업 계절근로자 제도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력 제고 - (과학적 도입관리)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통해 국민 일자리 침해 예방 및 선별 유입, 비자 심사 인프라 강화 및 입국 전 검증 강화	2024-09-26
-----	---	------------

법무부는 체류외국인 300만 시대를 대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추진방안**”을 발표하였음. 이번 방안은 매년 필요한 적정 비자 규모를 사전 공표하여 국민 일자리 침해 우려를 해소하고 무분별 유입에 따른 갈등을 예방하는 것을 전제로, **산업계 구인난과 지역소멸 위기에 따른 이민 확대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고 밝혔음

주요 내용으로는

① 우수인재 유치 문호를 확대

- 인공지능 · 로봇 · 양자기술 · 우주항공 등 첨단분야 고급인재 유치 지원을 위한 “톱티어(Top-Tier)” 비자를 신설, 우수인재와 동반가족에게 출입국·체류 편의를 제공하여 인재 유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정주를 유도
-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 후 인턴활동 등을 통해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하고 취업이 가능한 범위를 비전문 분야까지 넓히는 등 유학-취업 연계를 강화
- “청년 드림 비자(Youth's Dream in Korea Visa)” 신설을 통해 잠재력이 높은 한국전 국제연합(UN) 참전국, 주요 경제협력국 청년 등에게 국내 취업·문화체험 등 기회를 부여
- 전문인력 등의 배우자로서 한국어능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가사·육아를 포함한 비전문 분야 취업을 허용함으로써 안정적인 가족 단위 체류를 지원

② 지역자치단체·경제계 수요를 선제적으로 반영

- 핵심 수요자인 경제계가 제안하는 비자제도 개선안을 실제 제도로 구현하는 프로세스를 갖추고 현장 정책 수요를 발굴하는 한편, 제안 검토 과정에 민간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도록 “민관합동심의기구”를 신설하여 실용적인 비자정책을 마련
- 인구감소에 직면한 지자체가 지역발전전략에 맞게 외국인력을 유치할 수 있도록 비자 제도를 개선하고, 지역 맞춤형 이민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 활력 제고를 도모

③ 과학적·체계적인 외국인력 도입시스템을 구축

- 업종·직종별 인력수급 불균형과 불법체류 등 이민정책적 영향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다음 연도에 필요한 비자 규모를 국민 일자리 침해가 없는 적정 수준에서 결정

- 무분별한 인력 도입으로 인한 국민 일자리 침해와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는 “비자 발급규모 사전 공표제”의 고도화를 추진
- 재외공관 비자 심사 강화 및 민간송출입기관 관리 강화를 통해 해외 인력도입 시스템을 개선하고, 유입 단계 검증을 강화

국토교통부

「일산신도시 기본계획」공개

- 일산신도시 기본계획(안)을 마지막으로 1기 신도시 5곳 밑그림 공개 완료
- 총 30만호 규모로 계획된 1기 신도시, 도시정비로 약 54만호 규모로 탈바꿈
- 향후 지방의회, 지방위원회 심의, 경기도 승인을 거쳐 연말까지 승인 목표

2024-09-25

국토교통부는 「**일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이 공개되며, 이로써 1기 신도시 5곳의 밑그림이 모두 제시되었다고 밝혔다.

* 8.14일 중동·산본, 8.30일 평촌, 9.10일 분당, 9.25일 일산 신도시 기본계획(안) 공개

일산 신도시는 “활력있고 생동감있는 공원도시 일산”를 비전(Vision)으로, ①생동감 있는 녹색공원도시②이동이 편리한 교통도시③활력있는 자족도시④쾌적한 정주환경도시 ⑤살기 좋은 복지문화도시라는 다섯 가지 목표에 따라 정비될 계획이라고 밝힘. 특히, 기본계획(안)은 호수공원, 문화공원 등으로 대표되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지하면서,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고 주거·일자리·문화 등 융복합 도시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도시공간 구상계획도 제시하였음

일산 신도시 기본계획안

“ 활력 있고 생동감 있는 공원도시 일산 ”

(Vibrant Park Town)

목표 1

생동감 있는
녹색공원도시

풍부한 공원·녹지 자원
활용 극대화

목표 2

이동이 편리한
교통도시

사통팔달의
스마트 연계교통체계 구축

목표 3

활력있는
자족도시

용·복합 직주락
(Work, Live, Play)
도시 조성

목표 4

쾌적한
정주환경도시

공원을 품은 해 뜨는
아파트 단지 조성

목표 5

살기 좋은
복식문화도시

남녀노소 모두가 행복한
복식문화도시 조성

일산 신도시의 평균 용적률은 1기 신도시 중 가장 낮은 169%로써, 기본계획(안)에서 제시된 기준 용적률은 아파트 300%, 주상복합 360%(주거 260%, 비주거 100%) 등임. 이를 통해 2.7만호 규모의 주택 추가 공급기반(前 24만명 10.4만호 → 後 30만명 13.1만호)이 마련될 것으로 보임

* (평균 용적률) 일산 169%, 분당 184%, 평촌 204%, 산본 205%, 중동 226%

1기 신도시는 '80년대 후반 수도권 권의 주택문제 해소를 위해 「200만호 건설계획('89년)」을 통해 조성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신도시로서, 총 29.2만호 규모로 조성된 1기 신도시 5곳은 30여년이 지난 현재 총 39.2만호 규모의 도시로 성장하였으며, 올해 4월 시행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기본계획(안)에 따라 14.2만호의 추가공급 기반이 마련되는 등 '35년까지 총 53.7만호 규모의 도시로 재정비할 계획임

< 1기 신도시 세대·인구 현황 및 계획 >

	합계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최초 조성 세대수, 만호	29.2	9.7	6.9	4.2	4.2	4.1
계획인구 수, 만명	116.8	39.0	27.6	16.8	16.8	16.6
현재 세대수('22년 기준)	39.2	13.7	10.4	5.1	4.2	5.8
인구 수	95.4	33.2	24.1	13.1	11.0	14.0
'35년 목표 세대수	53.7	19.7	13.1	6.9	5.8	8.2
인구 수	124.2	45.2	30.3	16.3	14.3	18.1

1기 신도시 5곳의 기본계획(안)은 현재 진행 중인 주민공람을 거쳐, 향후 지방의회 의견청취, 노후계획도시정비 지방위원회 심의, 경기도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연내 기본계획 수립 완료를 목표로 추진됨. 1기 신도시 기본계획(안)에 앞서 공개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안)」도 1달 간의 의견조치를 종료(8.14~9.12)하였으며, 향후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10~11월 중 수립을 차질없이 완료할 계획임

또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또한 예정대로 이번 주 금요일까지 각 지자체가 공모 제안서를 접수(9.23~27) 받을 계획이라고 밝힘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내용	시행일자
행정안전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09-27 시행

부정수익자가 부정이익 등에 대한 환수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자진하여 신고하고 부정이익 등을 모두 반환한 경우 제재부가금의 면제 범위를 축소하고, 부정청구 등의 신고자뿐만 아니라 그 친족 또는 동거인도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구조금 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426호, 2024. 3. 26. 공포, 9. 27. 시행)됨에 따라, 부정수익자가 자진하여 신고한 시점에 따라 제재부가금의 감면 정도를 다르게 정하고, 구조금을 산정할 때 불이익조치가 발생한 날부터 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 또는 실수입액의 월평균액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부정청구 등을 신고한 자에 대한 보상금 산정 기준을 보상대상가액의 액수에 따라 세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부정수익자의 제재부가금 감면기준 구체화 (제5조제1항 및 별표 1 제4호)

- 환수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부정이익 등을 자진신고하고 모두 반환한 부정수익자 중 부정이익 환수 등을 위한 출석 등 요구나 조사 전에 자진신고를 한 자에게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그 밖의 자에게는 제재부가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하도록 함

② 부정청구 등을 신고한 자에 대한 보상금 산정 기준 조정 (제19조제1항, 별표 2 신설)

- 종전에는 보상대상가액의 액수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보상대상가액의 30퍼센트를 보상금으로 산정하였으나, 앞으로는 보상대상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금액에 따라 구간을 나눠 초과 금액에 구간별로 누적하여 차감된 비율을 곱하여 보상금을 산정하도록 보상금 산정 기준을 조정함

③ 구조금 산정 기준 구체화 (제22조)

- 육체적·정신적 치료를 위한 비용, 전직 등으로 인한 이사 비용, 신고 등을 이유로 한 소송의 변호사 등 수임료 및 불이익조치가 발생한 날부터 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 또는 실수입액의 월평균액 등을 고려하여 구조금을 산정하도록 함
- 신고자 또는 구조금 지급을 신청한 사람이 신고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구조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④ 구조금 지급 결정 절차 구체화 (제23조의3 신설)

- 국민권익위원회는 구조금 지급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전에 구조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한 후에 보상심의위원회가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의 적정성을 심의·의결하도록 함

기획재정부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2024-10-01 시행 예정

「관세법」제71조제1항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해서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과일류의 공급부족 우려를 해소하고 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등 10개 물품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기간을 '2024년 9월 30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개정령

2024-09-27 시행

부정당업자의 계약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이 경미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일정금액의 납부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400호, 2024. 3. 27. 공포, 9. 27. 시행)됨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계약질서위반행위의 종류별 납부 금액과 납부 절차 등을 정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에 참가하는 기업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계약에 관한 이의신청 기간을 이의신청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5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5-05-01 시행 예정

자치분권의 확대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중 지방관리구역항 및 지방관리연안항에서의 항만 재개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내용으로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819호, 2023. 10. 31. 공포, 2025. 5. 1. 시행)됨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통지, 법률에 따른 허가나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의무의 이전 인가 등에 관한 권한 주체에 시·도지사를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 및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의견접수기간
국무조정실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09.27. ~11.06.

신산업·신기술 기업들의 활발한 실증과 시장진출을 위해서는 원활한 규제 특례 운영이 중요하나, 부처간 이견 발생시 심의가 지연되고, 부처간 상이한 업무처리로 인해 사업자들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규제 특례 제도 운영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 및 의견제출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여 부처간 이견 발생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규제 특례 운영에 필요한 통일된 업무처리절차의 범위와 내용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규제샌드박스 표준업무처리절차 근거 규정 (안 제13조의7조)

- 개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 특례 심의 등과 관련된 절차 및 기준을 정하여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

②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특례위원회 심의 지원(조정) 기능 명확히 규정 (안 제16조의2조)

- 규제 특례와 관련된 기관 간 이견 발생 시 규개위가 조정·심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개위가 직권으로 개입하는 경우와 규제 특례 위원회 또는 규제 주관 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개입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 규제 특례 위원회 상정 전에 규개위에 의견 제출 등이 요청된 경우 의견 등을 받는 데 드는 기간은 행정규제기본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규제특례 위원회 상정기간에서 제외되도록 함

※ 문의처 :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 \(전화: 044-200-2429, 팩스: 044-200-2455\)](tel:044-200-2429)

환경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09.25. ~11.04.
-----	---------------------------------	------------------------

재활용 기술 및 시장 발전에 따라 시중에 판매 중인 대부분의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이 가능하게 되어 안전한 처분(폐기물부담금)에서 재활용(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으로 정책적 전환이 필요함

이에 폐기물부담금 부과 제외 대상(플라스틱을 사용하는 제품)에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제품과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제16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5에 따른 제품을 추가 (안 제10조)

※ 문의처 : [환경부 이차전지순환이용지원단 \(전화: 044-201-7399, 팩스: 044-201-7394\)](tel:044-201-7399)

환경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2024.09.25.
~11.04.

재활용 기술 및 시장 발전에 따라 시중에 판매 중인 대부분의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이 가능하게 되어 안전한 처분(폐기물부담금)에서 재활용(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으로 정책적 전환 필요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유해물질 사용제한 및 회수·인계·재활용 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 전 품목 확대** (안 제8조, 안 14조, 안 15조의3, 안 15조의5, 안 36조의3, 안 별표3의4, 안 별표2, 안 별표4, 별표 1 및 별표 3 삭제)
 - 안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제외한 모든 전기·전자제품에 대해 유해물질 사용 제한 의무 부여(안 제8조)
 - 안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제외한 모든 전기·전자제품에 대해 회수·인계·재활용 의무 또는 회수 의무 부여(안 제14조, 안 제15조의5)
 - 대상 전기·전자제품 전 품목 확대에 따라 유해물질의 사용제한 대상 전기·전자제품을 규정한 별표 1과 회수·인계·재활용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을 규정한 별표 3 삭제
 - 별표 3 삭제에 따라 규제의 재검토 사항(회수·인계·재활용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의 범위)을 제14조만으로 규정(안 제36조의3)
 - 별표 3 삭제에 따라 태양광 패널을 별도 규정(안 제15조의3)
 - 별표 3 삭제에 따라 회수의무량 계산 및 재활용실적(회수실적) 인정기준 설정에 필요한 제품군을 별표 5로 재규정(안 별표3의4, 안 별표4)
 - 이동전화단말기 외 전지가 포함된 전기·전자제품 종류 증가에 따라 유해물질 함유기준의 예외 항목을 이동전화단말기의 전지에서 전기·전자제품에 내장된 전지로 확대(안 별표2)
- ② **기존 제품군(1. 온도교환기기, 3. 통신·사무기기, 4. 일반 전기·전자제품)을 대형 제품(1. 온도교환기기 등)군과 일반 중소형 제품(4. 일반 전기·전자)군으로 조정** (안 별표5)
- ③ **전기·전자제품 재활용부과금 납부 시 재활용·회수 의무이행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 면제** (안 제16조제2항, 안 별표8)
- ④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 자진신고 시 최초가 아니더라도 과태료 경감** (안 별표8)

※ 문의처 : [환경부 이차전지순환이용지원단](http://www.mae.go.kr) (전화: 044-201-7399, 팩스: 044-201-7394)

환경부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024.09.26.
~11.05.

건설폐기물의 보관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동일한 위반내용에 대한 처벌규정이 중복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건설현장 작업시간 중에는 덮개 개방을 허용하되, 비산먼지 등 주변 환경 영향 우려 등을 감안하여 그 대상을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및 발생 억제 조치를 한 경우로 한정
- ②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할 경우 동일한 위반내용에 대한 처벌규정이 중복되므로 일부 문구 삭제

※ 문의처 :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전화: 044-201-7363, 팩스: 044-201-7376\)](tel:044-201-7363)

국토교통부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9.25.
~11.04.

현행 법령 상 공항을 사용한 자만을 대상으로 여객공항사용료를 징수함에 따라 공항사용료가 포함된 항공권을 구매한 국민이 개인적 사정으로 항공권 취소 없이 탑승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후 공항사용료를 공항공사에 환급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 미비하고 또한 미탑승 승객의 공항사용료를 공항공사의 수익으로 귀속시키는 근거도 부재하여, 이러한 법적근거의 미비로 미탑승 해당 사용료를 항공권 판매자(항공사)의 잡수익으로 취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여객공항사용료 징수 범위를 공항을 사용하려는 자로 확대하고 공항사용료가 포함된 항공권을 구매한 국민이 항공기 미탑승으로 공항시설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구매자가 여객공항사용료의 반환을 5년 이내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기간 내 반환 청구가 없는 여객공항사용료는 국고에 귀속되도록 규정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공항 사용예정자 사용료 징수 근거 마련 (제26조제1항)**
 - 공항 사용예정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공항시설관리권의 징수 대상을 사용하려는 자로 확대
- ② **공항 사용예정자 사용료 징수 근거 마련 (제32조제1항)**
 - 공항 사용예정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공항운영자가 징수할 수 있는 대상을 공항을 사용하려는 자로 확대
- ③ **반환청구권 부여, 미환급 여객공항사용료 국고귀속 근거 마련 (제32조의2)**
 - 승객이 항공권 구매 후 미탑승(공항 미사용) 시 여객공항사용료 징수권자인 공항운영자에게 환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
 - 여객이 환불청구권 기간(5년) 내 미청구 시 징수대행자(항공사)의 수익으로 계상되지 않도록 국고귀속 조치
 - 여객이 유효기간 내 환불청구권을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사전안내 통지를 의무화
 - 시효(5년)가 만료된 사용료를 국고에 귀속하지 않을 경우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 가능하도록 규정

④ **사용료 환불청구권 사전통지 미이행 시 처벌 근거 마련 (제69조제1항)**

- 승객에 대한 사용료 환불청구권 보유여부 통지 규정(제32조의2제3항)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 미이행 시 처벌근거(과태료 부과) 마련

※ 문의처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 \(전화: 044-201-4190, 팩스: 044-201-5623\)](tel:044-201-4190)

국토교통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09.26.
~11.05.

정비사업의 속도를 제고하고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비계획 변경 사항 중 공공주택 공급계획의 변경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 변경 등을 경미한 변경 사유에 추가하여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공유지가 포함된 정비구역의 경우 해당 국·공유지 재산관리청이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조합설립 등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한편,

재개발 추진 시 조합이 의무적으로 건설하여 공공에 제공하는 임대주택의 인수가격의 산정 기준을 기존의 표준 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로 변경하고, 가산비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인수자가 정하도록 하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위한 인력확보기준을 완화하는 등 정비사업 촉진에 필요한 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개선하려는 것임

※ 문의처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전화: 044-201-3384, 팩스: 044-201-5532\)](tel:044-201-3384)

국토교통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09.23.
~10.14.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관리계획이 수립된 경우 일반주거지역에 한해 1단계의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하였으나, 노후·저층주거지 정비 활성화를 위해 전용주거지역을 포함하여 2단계 이상 용도지역 상향을 허용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관리지역의 용도지역 상향 범위 확대 (안 제38조의5)**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전용주거지역도 용도지역 상향을 허용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등 심의를 거친 경우 최대 준주거지역까지 2단계 이상 용도지역 상향을 허용

※ 문의처 :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 \(전화: 044-201-4944\)](tel:044-201-4944)

화장품 포장의 기재·표시에 대한 문언 보완 등의 내용으로 「화장품법」이 개정(법률 제20248호, 2024. 2. 6. 공포, 2025. 2. 7. 시행)됨에 따라 외부 포장에 대한 상세 기재·표시 기준을 정하고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의 지정 해제·변경 신청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영업 등록 등의 민원사무에 전자적 방식의 증명서를 도입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개선하며 최근 화장품을 표방하며 인체 내 주사 등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사용법의 표시·광고에 대한 소비자 안전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관련 영업자의 준수사항과 그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한 화장품 사용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화장품제조업 등 민원사무에 전자문서로 된 등록필증 등 포함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제8조의2, 제8조의3, 제9조, 제15조 및 제17조의3,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6호의4 서식, 별지 제8호 서식 및 별지 제11호 서식)**
 - 화장품제조업 등 영업의 등록(신고) 필증 발급 및 기능성화장품의 심사결과통지서 발급 등의 민원사무에 전자문서 활용 근거를 마련함
- ②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의 지정 해제(변경) 심사 신청 절차 마련 (안 제17조의3 별지 제13호의2, 제13호의3 서식 및 별표 9)**
 - 화장품 제조업자 등이 화장품에 사용이 금지된 원료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와 서식 및 수수료 규정을 정비함
- ③ **화장품 외부 포장의 기재·표시에 관한 상세 기준 등 마련 (안 제19조 및 별표 4)**
 - 소비자가 외부에서 기재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외부 포장에 기재·표시한 것으로 같음함
 -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기재 시 염모제(탈염·탈색 포함)와 제모제의 경우는 공통 사항만을 외부 포장에 기재하고 이 외의 사항은 첨부문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두 개 이상의 화장품의 세트 포장에는 개별 제품의 제조번호 확인을 위한 관리 번호를 기재하거나, 제조번호의 기재·표시 위치를 안내하는 문구만 기재할 수 있도록 함
 - 두 개 이상의 화장품의 세트 포장에는 일부 제품의 사용기한만 기재하거나, 개봉 후 사용기간의 기재·표시 위치를 안내하는 문구만 기재할 수 있도록 함
- ④ **화장품 표시·광고에 대한 준수사항 및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강화 (안 별표 5 및 별표 7)**
 -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그러한 사용을 암시하는 표시·광고의 금지를 준수사항에 반영하고 관련 행정처분 기준으로 업 취소 등을 신설함

※ 문의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전화: 043-719-3409, 팩스: 043-719-3400)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0인)	2024-09-26 발의
최근 특정 재벌 대기업이 오히려 일가의 더 쉬운 지분 세습을 위해 우량한 기업의 가치를 의도적으로 억누르거나 일반주주의 손해를 초래하는 주식 분할, 불공정 인수합병을 감행하였고, 이런 행태가 우리 주식 시장의 가치 평가를 저해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이에, 상법상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새로이 규정함으로써 이사와 이사회가 특정 주주나 그 이해관계인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의사결정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었음 그러나 상법상 이사는 회사와 “위임 관계”를 맺는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주주와는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없어 주주의 이익을 대변할 충실의무를 부여할 수 없다는 논리적 어려움이 있었음 따라서 현행법의 이사의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에 더해, 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특정 주주나 이해관계인이 아닌 총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변할 의무를 부과하여 기업의 투명한 의사 결정과 지배 구조 개선을 추구해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자 함 (안 제382조의3)		
정무위원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등 10인)	2024-09-23 발의

2016년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사건 이후 회계부정을 근절하고자 지난 2017년 10월 표준감사시간제, 지정감사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외부감사법이 도입되어 올해로 시행 6년째를 맞이하고 있음. 그러나 동 제도 도입 이후 회계품질 및 회계투명성이 제고되었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에는 아직 논쟁이 있는 반면 기업들은 감사 및 관리 비용의 급격한 증가에 비해 제도의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음

이에 회계투명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해외 주요국가의 운영사례를 반영하여 해당 제도가 시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인 중소 비상장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이 되는 경우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의무를 3년간 유예함. 또한,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을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는 상장회사에게는 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제출을 면제하도록 함 (안 제8조제6항 및 제7항)

- ② 직권지정 사유 중 회계 부정 위험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은 ‘재무기준 미달’ 및 ‘대표이사 3회 이상 변경’ 사유를 폐지함 (안 제11조제1항제6호 삭제, 안 제11조제1항제11호)
- ③ 직권지정 사유의 위반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경미한 위반은 지정 조치에서 제외하되,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신설함 (안 제11조제8항 신설, 안 제11조제1항, 제47조제2항 및 제4항)

정무위원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2인)

2024-09-26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예치 또는 신탁하여 관리 중인 이용자의 예치금을 보호하여야 하고, 예치 또는 신탁된 예치금에 관한 상계·압류(가압류 포함)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관하여 상계·압류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가상자산사업자가 파산하는 경우 가상자산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경우 예치금과 같이 상계·압류를 금지하도록 명시 규정하여 이용자에게 가상자산이 우선 지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7조제5항)

기획재정위원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등 11인)

2024-09-23 발의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 50%는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상속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를 적용받을 경우 최대 60%의 세율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는 OECD 등 주요 국가들과 비교할 때 가장 높은 수준으로 알려져 있음

OECD의 많은 국가들이 상속세를 폐지하고 있으며 상속 주식에 일괄적으로 할증과세를 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한 바, 향후에는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승계를 원활하게 하여 법인세와 소득세를 더 걷는 쪽으로 가야 함

한편, 상속세를 운영하는 대부분의 OECD 회원국은 기업승계에 대해서는 상속세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세율인하 및 공제확대를 통해 세금을 대폭 감면하는 등 기업승계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기업상속 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공제요건이나 사후관리 요건이 까다로워 활용도가 낮고, 이로 인해 기업상속을 포기하고 외국으로 자본이 이탈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이에 현행 상속세율을 인하하고, 상속공제 중 배우자 상속공제와 일괄공제 금액을 확대하며, 기업상속에 대한 공제

요건을 완화하고 최대주주 등의 상속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하는 등 가업승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가업상속공제의 요건 중 피상속인 경영기간을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단축함 (안 제18조의2제1항)
- ②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액을 5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함 (안 제19조제4항)
- ③ 상속세 일괄공제금액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함 (안 제21조제1항)
- ④ 상속세 과세표준의 구간별 세율을 인하함 (안 제26조)
- ⑤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등의 주식등에 대한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함 (제63조제3항 삭제)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1인)

2024-09-23 발의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딥페이크를 비롯한 성적허위영상물, 불법촬영물 등의 디지털성범죄가 건잡을 수 없는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이에 따른 2차 피해뿐 아니라, 디지털성범죄 정보 삭제제를 위한 사회적 비용 역시 급증하고 있음

하지만 텔레그램, 디스코드, 엑스(구 트위터) 등 해외플랫폼들이 디지털성범죄 정보 유통방지에 미온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해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들의 책임 역시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디지털성범죄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삭제·접속차단 등의 의무가 부여되는 청소년보호책임자와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의무를 갖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안 제42조의3제1항 및 제44조의9제1항)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3인)

2024-09-23 발의

현행법은 부가통신사업자 및 「저작권법」제104조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조치의무사업자”라 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함)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이 근절되지 않는 상황임

이에 조치의무사업자에게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되는 경우 그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의무에 더해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를 추가 부과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안 제22조의5 및 제104조 등)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신뢰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안
(김우영의원 등 19인)

2024-09-24 발의

2016년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이 차기 산업혁명의 근간으로 대두된 후, 인공지능 생태계에 대한 투자와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세계적 전략컨설팅 기업인 맥킨지에 따르면, 내년까지 인공지능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약 6조 7,000억 달러로 예상하고 있고, 향후 상용화 추세, 딥러닝 개선, 빅데이터 연계 여부에 따라 인공지능의 영향력이 제조업, 자동차, 금융, 의료 등 모든 산업에 걸쳐 파급력을 가져올 것으로 예측한 바 있음

이에 각국은 인공지능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며 앞다투어 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는 법률안의 제정에 몰두하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 또한 인공지능 산업의 민간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논의가 한창인데 인공지능 인재 육성 및 산업 진흥을 이끌어가는 컨트롤 타워 및 법률적 근거가 부재하여 산업의 전반적인 육성 여건은 여전히 미진한 실정임

이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여건을 조성하도록 근거를 수립하는 한편, 인재 육성 전략의 수립 및 민간 주도의 핵심기술 발굴 지원 등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도록 하여 국민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인공지능산업을 진흥하고 인공지능사회의 신뢰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3년마다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인공지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시행하도록 함 (안 제5조)
- ③ 인공지능사회의 구현, 인공지능산업의 진흥 및 인공지능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인공지능위원회를 두도록 함 (안 제6조)
- ④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전문기술의 지원, 인공지능과 관련한 시책의 개발 및 관련 사업의 기획·시행에 관한 전문기술의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국가인공지능센터를 두도록 함 (안 제9조)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사업의 수출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지능사업의 투자촉진과 수출시장의 확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2조)

-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기술 도입 촉진 및 활용 확산을 위하여 관련 기업에 대한 컨설팅,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임직원에게 대한 인공지능기술 도입 및 활용 관련 교육, 관련 자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8조)
- ⑦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술인력 양성체제 구축, 산·학 협력 활성화를 통한 우수 인력의 양성, 기술인력의 교육훈련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2조)
- ⑧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개발·활용·제공하는 자는 해당 인공지능이 고위험영역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하며,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 위원회에 고위험영역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도록 함 (안 제29조)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포용법안(김장겸의원 등 10인)

2024-09-26 발의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급부상하는 등 과학기술 발전이 가속화되면서 사회와 경제의 모든 영역에서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이제 디지털기술은 일상생활의 편리함을 제공하고 기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넘어, 인간과 공존하고 융합하는 디지털심화 시대의 필수재가 되었음

그러나 그 이면에는 디지털 기술의 이용·활용 능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이 금융, 교통, 문화 등 일상생활의 전반에서 차별과 소외를 경험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으며, 딥페이크·SNS 과의존 등의 심각한 역기능이 발생하고 있음. 이는 엄중한 사회 문제가 되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며 또 다른 갈등과 분열을 초래하고 있음

현행 「지능정보화 기본법」은 지능정보화 분야의 기본법으로, 정보통신 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의 개발과 관련 산업생태계 조성 등 그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나, 디지털 포용과 관련해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 격차 해소 위주의 정책으로 구성되어 있어 디지털포용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기업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디지털포용법을 제정하여 **모든 국민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안전하고 올바르게 누릴 수 있는 법적·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디지털포용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관련 산업과 기술의 육성을 위한 기초를 마련함**으로써 사회구성원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산업 및 국가의 성장을 통한 실질적인 디지털 포용 사회 구현을 이룩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디지털포용 증진과 관련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 ② ‘디지털 포용’을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고르고 안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고 그 역기능을 예방·해소하여 지능정보기술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 조성 및 그 지향점으로 정의함 (안 제2조)

- ③ 디지털 기술에 원활하게 접근하기 위한 디지털역량 함양을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디지털 기술에 대한 대체수단권을 보장하고 그 역기능을 예방·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함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 ④ 디지털포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 (안 제8조 및 제9조)
- ⑤ 통합적인 디지털포용 정책 수립 및 이행을 위해 디지털포용 영향평가를 도입함 (안 제12조)
- ⑥ 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디지털역량 제고를 위하여 디지털역량 함양 활동, 디지털역량센터 설치 등을 규정하고, 디지털취약계층의 접근성 보장을 위하여 접근성 품질인증 제도, 우선 구매 촉진 등의 방안을 마련함 (안 제14조부터 제24조까지)
- ⑦ 디지털포용기술·서비스의 발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기술·서비스 표준화, 유망 디지털포용기술·서비스에 대한 지정 및 지원, 디지털포용기술·서비스의 연구·개발 및 확산을 위한 사업추진 및 비용지원, 세제지원, 수출진흥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5조부터 제34조까지)

국방위원회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형의원 등 17인)

2024-09-23 발의

현행법은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국외로 수출하거나 그 거래를 중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안보 유지 및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방위사업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을 제한하거나 조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쟁 중인 국가에 대한 수출제한은 명시하지 않고 있음

또한, 관계법령인「대외무역법」상 ‘무역에 관한 제한 등 특별 조치’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쟁·사변 중의 국가에 물품 수출과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방위사업법의 수출제한 기준도 다소 강화될 필요성이 제기됨. 그런데 최근 정부 관계자들은 교전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및 수출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 바, 이는 한반도 안보에 위기를 초래하는 행위로서 최근의 조사에서 확인된 국민여론에도 반하는 것임

이에 수출 대상 국가에 전쟁 또는 사변이 있을 경우나 수출 대상 국가가 조약과 국제법규에서 정한 우리나라의 권익을 인정하지 아니할 경우에 방위사업청장이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도록 하여 방산물자 등의 수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여 헌법에 따른 국제평화 유지 의무를 이행하려는 것임 (안 제57조제4항 단서 신설 및 제62조제4항 신설)

행정안전위원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0인)

2024-09-25 발의

옥외물광고법 시행령상에는 간판 등 옥외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로 표시해야 하고, 만일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글과 병기(併記)하도록 하여 한글을 보존하고 선양하는 사회 문화를 지키도록 하고 있으나, 2019년 한글문화연대가 12개 자치구 간판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한글 표기 실태에 따르면 전체가 외국 문자인 간판은 23.5%를 차지할 정도로 간판 등의 한글 표기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이에 국어를 보존하고 선양해야 할 국가적 책무가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커지는 실정임. 현행법은 건물 3층 이하에 설치되는 크기 5제곱미터(m^2) 이하 간판들은 허가·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제재가 없으나, 건물 4층 이상에 크기 5제곱미터(m^2)가 넘는 간판이 외국어로만 표기돼 있는 경우 최대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처벌을 받는 사례는 거의 없음. 이는 한글 표시 위반 정도로 기소를 위한 고발 등의 행정 행위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간판 등 광고물에 대해서는 건물 층수나 크기와 관계없이 외국어로만 표기할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여, 간판의 종류와 층수는 완화하되 처벌의 수위를 낮춰 한글 표기 의무 계도의 효율성은 높이고,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간판의 한글 표시가 정착될 수 있게 유도하고자 함 (안 제3조의3 신설, 제10조제1항, 제20조제1항제1호 개정)**

교육위원회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의원 등 10인)

2024-09-26 발의

현행법은 주택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개발지역에 학교 신설 수요가 생길 경우 학교용지 매입에 필요한 돈에 충당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음. 이에 따라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는 분양가격의 0.8%에 해당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부담함

한편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하여 학교신설 수요는 여전히 많으며, 2032년까지 초·중·고등학교 740개의 설립 계획이 있음. 학교용지부담금이 없으면 학교 신설 수요가 많은 지역이나 용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학교신설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힘들어 학교신설이 어렵게 되고, 학교 신설 비용을 조세로만 부담할 경우 개발사업이 활발한 지역에 예산 지원이 편중되어 세금이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특정지역의 이익을 위하여 투입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

그런데 교육부는 최근에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경제를 촉진하기 위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음. 학교용지부담금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폐지하면 안 되지만 최근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부과 요율에 관한 특례를 인정할 정책적인 필요는 인정됨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하고 개교 3년 전 학교용지를 매입하는 것을 가정하여 추계할 경우, 2030년 개교예정(2027년 용지매입)인 학교까지 기존 부담금 특별회계 여유재원을 활용할 수 있음. 이 경우 2031년 개교예정(2028년 용지매입)인 학교는 학교용지부담금을 활용할 수 없음. 그러나 2028년에도 용지매입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위한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요율에 관한 특례를 인정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경제를 촉진하면서도, 2028년에 현행법에 따른 1년치 학교용지부담금이 적립되도록 하여 추후 설립예정인 학교의 부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안 제5조의3 신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자력산업 발전 지원 특별법안(고동진의원 등 13인)

2024-09-23 발의

반도체 등 대한민국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탄소중립 및 에너지안보와 같은 정책목표를 모두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산업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수적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문재인 정권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부지제약, 일조량 등 불안정한 전력 공급, 탄소중립 이행 등 국내 여건에 부합되기 어려운 RE100의 확산 시도들이 지속됨에 따라, 대한민국 핵심기간산업의 원활한 추진과 탄소중립 및 에너지안보 확립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윤석열 정부는 탄소에너지에 의존하지 않는(Carbon Free) 에너지를 사용하겠다는 ‘CFE 이니셔티브’를 전세계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바, CFE의 핵심인 ‘원자력 발전’이 주목받고 있음. 올해 4월 기준, 원전 에너지원의 전력단가는 68원으로, 태양광 125원, 석탄 141원, LNG 167원 등 다른 에너지원과 비교해 저렴할 뿐만 아니라, 공급이 불안정한 재생에너지 등과 다르게 공급 안정성이 뛰어난 장점이 있음

무엇보다 최근 인공지능(AI)이 확산되고 반도체산업의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원자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 실제, 기존에 탈원전을 선언했던 스위스, 이탈리아, 스웨덴, 벨기에, 프랑스 등은 자국의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원자력 발전으로 선회했으며, 세계의 주요국 중에서는 독일만이 탈원전을 유지하고 있는 작금의 흐름을 고려했을 때, 정권의 변화에 상관 없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원자력산업을 안정적으로 유지 및 발전시켜야 한다는 지적들이 제기되고 있음

하지만 현행 법체계에서는 원자력 분야를 산업적인 측면에서 정하고 있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바, 대한민국의 청년들과 미래 세대의 이익을 위하여 ‘원전 생태계의 완전한 복원’이 시급하다고 할 것임

이에 대한민국 원자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전력 공급 및 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원자력의 대내외적인 주권을 확립하고 산업의 수출 확대를 통하여 대한민국 전체 산업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원자력산업 발전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0인)

2024-09-24 발의

현행법상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제도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기업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 있음. 또한, 지역 실정에 적합하게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무휴업일 지정과 영업시간 제한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량권을 이용하여 의무휴업일 지정을 철회하거나 영업시간을 1시간만 제한하는 등 입법 취지를 무력화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대규모점포 등에 대하여 반드시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의무휴업일 지정을 명하도록 하고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12조의2)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등 10인)

2024-09-25 발의

현행법은 진입장벽이 낮아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한 사업형태로 그 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 중소기업부장관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동 법 제8조에서 “대기업 등은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 추천에서 지정까지 최장 6개월이 소요되고, 소상공인단체의 신청부터 동반성장위원회 추천까지 최장 9개월이 소요되어 최장 15개월 동안 대기업의 인수, 개시 또는 확장을 막을 수 없음

이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한 업종 및 품목에 대해서 그 신청일부터 지정 여부를 심의, 의결한 날까지 대기업 등이 인수, 개시 또는 확장을 하지 못하게 제한하려고 함 (제8조제2항 신설 등)

주요 내용으로는

- ① 대기업등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소상공인단체가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신청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업종·품목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제2항 신설)
- ②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7조제1항 신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정진욱의원 등 11인)

2024-09-25 발의

현행법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 판매 등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영업비밀의 유출은 국가 경제적인 손실과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비밀 유출 행위와 유출 행위를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가 운영되지 않아 사전적 예방과 효과적인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는 비판적인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영업비밀 침해 소개·알선 등 행위에 대한 신고를 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영업비밀 유출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도록 하는 한편, 영업비밀의 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2조제3호의2 및 제16조제1항 각 호 신설 등)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정진욱의원 등 24인)

2024-09-25 발의

글로벌 반도체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함. 현행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의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규제 중심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제는 국내 기업의 투자 활성화에 장애가 될 수 있으며, 반도체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 및 경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반도체산업 전반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확대하고, 반도체 관련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기반시설 구축, 전문인력 지원, 기술보호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자 함. 또한, 반도체산업혁신특구를 지정하여 혁신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국내외 투자를 촉진하고 기술 개발 및 설계·제조·공급을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함. 반도체산업혁신특구는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중 일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기회발전특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등 다양한 지역에서 지정될 수 있도록 하였음.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반도체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정부는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함 (안 제5조)
- ② 반도체산업의 혁신 생태계 조성 및 지원과 관련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반도체경쟁력강화위원회를 두도록 함 (안 제8조)
- ③ 반도체산업 생태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연구개발, 기반 시설 구축, 전문인력 지원, 기술보호 등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9조)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산업단지나 경제자유구역,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지역, 연구개발특구로 조성된 지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반도체산업혁신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반도체산업혁신특구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기회발전특구·연구개발특구와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0조)
- ⑤ 반도체산업혁신특구를 조성하는 사업시행자는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당 인·허가 등의 신속한 처리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인·허가권자는 이를 신속히 처리하도록 함 (안 제13조)
- ⑥ 반도체산업혁신특구 관리주체와 관련 기업, 연구기관 등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령 정비가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속히 관련 법령 정비를 추진하도록 함 (안 제14조)
- ⑦ 반도체산업의 혁신 발전과 투자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반도체산업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관련 기금을 조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7조)
- ⑧ 반도체산업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하여 반도체기술 관련 대학의 설립, 반도체산업혁신특구로 이전 등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 (안 제18조)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2인)

2024-09-26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공장·사업장 등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권고할 수 있고, 신·재생에너지 설비 또는 기술의 이용·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전기 발전사업자가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내외 글로벌기업들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해당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2050년까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만 충당하겠다는 RE100(Renewable Electricity 100)을 선언하면서 국내 납품 기업들에게도 재생에너지의 사용을 요구함에 따라 재생에너지 수요는 높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높아 중소·중견기업이 전력시장에서 재생 에너지를 구매하여 사용하기에는 비용 부담이 큼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중견기업이 자신의 사업에 사용하는 전기를 생산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의 사용을 확대하려는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27조의3 신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1인)

2024-09-26 발의

현행법은 한국전력거래소와 송전·배전사업자가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를 위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제2호에 따른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출력 제어를 시행하는 경우에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이를 따르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기생산이 확대되면서 전력계통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재생에너지에 대한 출력제어가 빈번히 이루어짐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경영상 손실이 커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발생한 손실을 정당하게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30조)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허중식의원 등 11인)

2024-09-26 발의

해상풍력사업은 그간 발전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수용성 확보 및 복잡한 인·허가 절차 등을 모두 수행함에 따라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난개발에 대한 우려가 높았음. 더불어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소통도 부족하였음

이로 인해 올해 6월 기준, 상업운전 중인 해상풍력발전기 용량은 약 124.5MW로서, 2017년 ‘재생에너지 3020’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힌 2030년 해상풍력 보급 목표인 12,000MW의 약 1% 수준으로 매우 저조한 실적으로, 국가 탄소중립 목표의 실현과 해상풍력 보급 목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서는 기존 해상풍력발전 보급 방식에서 벗어나 획기적인 제도의 도입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해상풍력의 계획입지 및 산업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고,

예비지구 지정 및 변경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 반영을 통해 지역환경에 적합한 해상풍력발전시설을 도모하는 동시에 접근시설 및 공동구 설치를 연계함으로써 해상풍력발전 전력의 안전한 송전으로 해상풍력발전 보급 확대와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이 법은 계획입지를 통한 해상풍력발전시설의 설치와 해상풍력발전지구의 구성에 관한 통합적 행정절차와 해상풍력산업 보급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전부문에서 온실가스감축과 탄소 중립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 ② 국가로 하여금 해상풍력발전 보급을 확대하고 해상풍력발전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등 해상풍력 보급 확대 및 산업 발전을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해상풍력 발전사업자가 담당해야 할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 ③ 예비지구·발전지구 지정,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및 실시계획 승인 등 해상풍력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으로 해상풍력발전추진단과 해상풍력발전지원단을 둠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풍력입지정보망을 구축·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예비지구를 지정 및 기본설계안을 수립·확정하며, 예비지구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예비지구의 기본설계안에 대해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지역주민 및 어업인 등이 발전지구의 해상풍력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경제성 확보가 가능한 풍황을 보유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민관협의회의 협의를 거친 예비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6조)
-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송전사업자에게 공동접속설비 및 공동구의 건설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시설을 건설하는 경우 전력산업기반금으로 건설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7조)
-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발전사업의 능력을 갖춘 해상풍력발전사업자를 선정하고,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승인을 받도록 함 (안 제19조 및 제20조)
- ⑧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실시계획 승인 신청시 환경영향평가와 해역이용영향평가 절차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발전지구에서 실시계획 승인 등을 받은 때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이 의제되도록 함 (안 제21조 및 제22조)
- 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적화단지로 지정받은 단지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예비지구 또는 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 (안 제29조)
- ⑩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교육훈련과 국제협력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공공성이 높은 위촉위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의 수수 등 부정한 행위를 할 경우 이들을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둠 (안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이라는 전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은 더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우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한 역사적 사명으로, 이를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특히 해양풍력 같은 우리의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에너지 개발 및 육성 정책이 필요함

그러나 그간 해상풍력은 육상풍력에 비해 입지의 제약이나 환경문제 및 대량의 전력생산이 가능한 점 등에서의 여러 잇점과 조선·철강·해양플랜트 산업 분야와 연관성이 밀접함에도 해상풍력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입지발굴과 주민수용성 확보, 복잡·다단한 인·허가 절차 등으로 해상풍력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고, 국무총리 소속의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주민수용성 등이 확보된 환경친화적인 발전지구에 대해서 정부가 각종 협의 및 인·허가 등 해상풍력발전의 전과정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질서 있게 추진하여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이 법은 계획입지를 통한 해상풍력발전시설의 설치와 해상풍력발전지구의 구성에 관한 통합적 행정절차에 필요한 사항 및 해상풍력산업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상풍력발전의 질서있는 보급을 확대하여 발전부문에서 온실가스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고 해상풍력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 ② 국가로 하여금 해상풍력발전 보급을 확대하고 해상풍력발전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등 해상풍력발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 ③ 예비지구·발전지구 지정,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및 개발실시계획 승인 등 해상풍력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으로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을 둠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상풍력입지정보망을 구축·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예비지구 지정 및 기본설계안을 수립하며, 예비지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예비지구의 기본설계안에 대해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지역주민 및 어업인 등은 발전지구의 해상풍력발전사업에 참여하고, 바람연금 등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안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민관협의회 협의를 거친 예비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발전지구로 지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송전사업자에게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지구에 대하여 공동접속설비의 건설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송전사업자는 공동접속설비에 접속하는 해상풍력발전사업자에게 접속이용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6조 및 제17조)
-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발전사업의 능력을 갖춘 해상풍력발전사업자를 선정하고,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승인

을 받도록 함 (안 제19조 및 제20조)

- ⑦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실시계획 승인 신청시 환경영향평가와 해역이용영향평가 절차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특례 두고, 발전지구에서 실시계획 승인 등을 받은 때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이 의제되도록 함 (안 제21조 및 제22조)
-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적 화단지로 지정받은 단지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예비지구 또는 발전지구로 지정하고, 「전기사업법」제7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풍력발전사업자인 경우 이 법에 따라 선정되는 해상풍력발전사업자로 볼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 (안 제28조 및 제29조)
- 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해상풍력기술 동향 및 수요조사, 연구개발 및 평가 등을 추진하고,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추진하며, 해상풍력발전산업의 진흥과 해상풍력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해상풍력실증단지를 조성·운영하고, 해상풍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촉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상풍력과 관련한 연구기관·연구소 또는 단체 등을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하며, 해상풍력발전산업의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하고, 수출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안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익의원 등 10인)

2024-09-26 발의

정부는 최근 국가 신성장전략사업으로 전력사용량이 큰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AI 산업 및 데이터 산업 육성 등 첨단산업에 투자 확대를 가속화하고 있음

그런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처럼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고품질·대용량 전력망이 신속히 구축되어 전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필요가 있으나 전력공급 방안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특화단지를 지정하였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 생산량이 많은 지역과 전략산업 사업자와 지원시설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 중 전력계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지역이 특화단지에 우선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들 지역에 대한 국고보조금이나 주택공급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성공적인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16조제3항 및 제23조의2·제23조의3 신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3인)

2024-09-27 발의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로의 급격한 전환으로 액화천연가스(이하 “LPG”라 함)차량이 감소하고, 인건비 상승 등 경영환경이 악화되어 휴업·폐업하는 LPG 충전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주유소의 경우 셀프로 전환하여 운영이 가능하지만 LPG 충전소는 셀프충전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어 사업자는 폐업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안전관리자·사무원·세차원 등 충전소에 고용된 직원은 비자발적 실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한편 미국을 비롯한 독일·이탈리아·폴란드 등 유럽 국가 등에서는 LPG셀프충전이 보편화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도 '21년부터 규제특례(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전국 18개 LPG충전소를 대상으로 실증을 진행하여 안전성 등을 충분히 검증하였고, 셀프충전을 경험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결과 높은 만족도와 편리성을 확인할 수 있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갖춘 경우에도 LPG차량의 셀프충전이 가능하도록 허용함으로써 경영난을 겪는 LPG충전소의 휴업·폐업을 최소화시키고 고용을 유지하는 한편, LPG 가격 인하 효과로 인한 소비자후생의 향상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안 제29조)

보건복지위원회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2024-09-24 발의

현행법은 화장품의 기재사항을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할 때 제품의 명칭, 영업자의 상호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시를 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를 표시한 화장품도 제품의 명칭, 영업자의 상호 외에는 다른 상세정보를 인식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성분이 포함된 화장품을 사용하는 등 오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음. 또한 청각장애인도 제품의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화장품을 구매하고 사용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이에 영업자로 하여금 **화장품의 용기,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제품의 상세한 정보를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시각장애인 및 청각장애인이 화장품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타인의 도움 없이 획득하여 안전하게 구매·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10조제3항, 제10조제4항·제40조제1항제5호의 3 신설)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10인)

2024-09-23 발의

현행법은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제조등금지물질로 지정하여 모든 용도로의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시험·연구 또는 검사 목적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등금지물질을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한편, 제조등금지물질에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금지물질이 포함되어 있는데, 제조등금지물질이면서 금지물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금지물질의 수입 허가과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조등금지물질 수입 승인을 각각 별도로 받아야 하여 규제가 중복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금지물질 수입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별도 승인을 받지 않고 제조등금지물질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일한 화학물질에 대한 중복규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안 제117조제2항제3호 신설)

환경노동위원회

생활화학용품 피해배상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이연주 의원 등 10인)

2024-09-25 발의

2015년 1월 1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화학물질의 등록, 화학물질 및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유해성·위해성에 관한 심사평가,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생산·함유함으로써 국민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통과된 바 있음

그러나 2011년 가습기살균제의 살균 원료인 ‘폴리핵사 메틸렌 구아니딘(PHMG)’ 또는 ‘염화 올리고-에톡시 에틸 구아니딘(PGH)’ 때문에 산모와 영유아 등이 사망하거나 심각한 폐 손상을 입은 가습기살균제 사건에서 보듯이 생활화학용품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구제는 관련법령의 미비로 어려움이 있음

이에 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생활화학용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생활화학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고,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생활화학용품 사용으로 예상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구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생활화학용품의 화학적 부작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입증부담을 경감하는 등 실질적인 구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생활화학용품의 화학적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 ② “생활화학용품”이란 소비자가 가정, 학교, 사무실 등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용품 중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제2조제15호의 제품 및 위해우려제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품을 말함 (안 제2조제1호)
- ③ 생활화학용품의 제조자들은 그 생활화학용품을 사용한 자가 사망하거나 생활화학용품질병에 걸린 경우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짐 (안 제6조)
- ④ 생활화학용품질병 발생이 생활화학용품의 사용으로 인한 것으로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생활화학용품으로 인하여 생활화학용품질병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함 (안 제7조)
- ⑤ 피해배상청구권의 성립과 그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조자 등에게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청구권을 인정함 (안 제8조)
- ⑥ 생활화학용품의 사용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구제급여의 종류를 명시함 (안 제9조)
- ⑦ 판정위원회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에 관한 규정을 두며, 판정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공개와 방청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 (안 제16조 및 안 제18조)
- ⑧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데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생활화학용품질병피해 구제기금을 설치하도록 함 (안 제32조제1항)
- ⑨ 생활화학용품피해인정 등에 관한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심의하는 기구로 환경부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생활화학용품질병피해구제 재심사위원회를 둠 (안 제45조제1항)
- ⑩ 생활화학용품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유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과 일상생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함 (안 제53조제1항)

국토교통위원회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의원 등 10인)

2024-09-23 발의

자율주행자동차 제작·판매를 위한 레벨3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기준, 레벨4 이상 자율주행차를 위한 성능인증제가 마련되고, 자율주행 버스 등 여객·화물 운송 서비스 실증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등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환경이 조성되어 있음. 자율주행자동차는 새벽·심야노선, 벽지노선 등 일반 운전자가 선호하지 않는 여객·화물 운송에 이점이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여객·화물 운송 업계의 자율주행자동차 선호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현행 여객·화물 운송 사업의 경우 차량 내 운전자 탑승을 전제로 설정된 차량 안전관리, 운송 서비스 관리 등의 의무가 있어, 성능인증제 등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한 여객·화물 운송 사업 기반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자동차를 운송 사업에 활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여객·화물 운송사업자가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운송 사업을 할 경우 안전관리자를 지정하고,

지정된 안전관리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규정된 운수종사자의 의무 등을 자율주행자동차의 특성에 맞게 준수하도록 규정하여 안전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안 제9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등)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등 11인)

2024-09-23 발의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전기자동차 화재의 발화지점이 차량에 장착된 배터리(구동축전지)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전기자동차에 장착된 배터리 정보가 소비자에게 공개되고 있지 않아 전기자동차 사용자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음

현행법은 배터리가 전기자동차에 장착되는 단계에서부터 탈거 이후 단계에 이르기까지 배터리 이력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동차등록원부에 전기자동차에 장착되는 배터리 식별번호를 기재하도록 의무화하였으나(2025. 2. 17. 시행), 배터리 식별번호는 그 자체로 제조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일반 국민이 배터리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워 추가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전기자동차를 판매할 때 해당 자동차에 장착된 배터리 제조사 등에 관한 정보를 구매자에게 고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구매자가 배터리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자동차등록증에도 배터리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구매자의 정보접근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8조제2항 등)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

2024-09-23 발의

현행법은 페달 오조작 또는 급발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장치 장착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음

그런데 서울시청 앞 사고로 인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고,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이 늘면서 안전대책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해외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첨단운전보조장치를 장착하도록 하여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고 있음. 이 중 효과적인 장치로 페달오조작방지장치가 주목받고 있는데, 일본은 2025년 6월부터 신차에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부착을 의무화하였으며 UN의 자동/자율주행 및 차량 실무그룹(United Nations' Working Party on Automated/Autonomous and Connected Vehicles)은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가속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동 시스템(Acceleration Control for Pedal Error systems) 도입에 대한 규제 조항을 2024년에 채택한 바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페달오조작방지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하여 자동차 및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29조의4 신설 등)

국토교통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의원 등 19인)

2024-09-23 발의

노무비, 건설기계대여비, 자재비 등 하도급대금에 대한 체불 방지를 위해 현행법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공사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이는 공공기관 발주에 한정되므로 민간 부분의 하도급대금 체불 방지에 대한 실효성 있는 해법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공기관 발주에만 적용되는 공사대금지급시스템을 민간 발주 공사에도 확대하여 하도급대금과 임금 체불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고자 함. 또한,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발급·사용하는 전자카드를 대금지급시스템과 연계하여 건설현장 대금 지급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안 제34조제2항 및 제9항부터 제10항까지)

국토교통위원회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의원 등 17인)

2024-09-23 발의

현행법은 건설기계 대여 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면서도 예외규정을 많이 두고 있어, 건설기계임대업자에 대한 체불이 근절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고 있음. 또한 타인 소유 건설기계를 대여하고 중간에 이득을 취하는 불법하도급이 만연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이를 제재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

이에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 예외규정 중 일부를 삭제하고, 임차인의 강요 등으로 인하여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 처벌규정을 강화하고자 함** (안 제22조제1항, 제41조제10의2호, 제44조제1항1호의3)

또한, **대여할 수 있는 건설기계를 한정하여 대여할 수 없는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행정처분 규정을 신설하고 벌칙을 강화하여 불법하도급과 체불을 방지하려는 것임** (제25조의3제1항제2호, 제35조의2제1항제7호, 제40조제4호의2)

국토교통위원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2024-09-23 발의

'23년에는 전년 대비 건축 허가면적이 25.6% 감소하고, 건축 착공면적도 31.7% 감소하는 등 건설 및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음

건설투자 및 부동산 경기는 지역경제와 서민층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체감경기 개선을 위해 개발부담금을 감면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으로서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인가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감면하여 건설투자 활성화와 경기활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7조의3 신설)

국토교통위원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5인)

2024-09-26 발의

모듈러 건축공법은 기존 현장 중심의 시공에서 탈피해 표준화된 모듈을 공장에서 생산하고 현장으로 운반·조립한 후 건축물을 완공하는 방식으로 공기단축, 건축물 폐기물 감소, 에너지 사용 절감 및 탄소 배출 감소 등 많은 장점을 갖고 있음

국내 주택건설산업은 높은 GDP 성장 기여와 고용 규모가 큰 대표적인 일자리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건설인력의 고령화, 비숙련 외국인 건설인력 증가 등으로 인해 성장이 한계에 직면함. 특히 4차 산업혁명, 인구구조 등의 급속한 사회·경제적 변화 대응을 위한 주택건설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상황에서 모듈러 건축공법이 적용된 모듈러주택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음

이에 **모듈러주택 인정대상에 준주택(숙박시설)을 추가**해 모듈러주택 인정제도 활성화 및 산업 외연을 확대하고자 함. 또한 모듈러주택이 저탄소·친환경 건설방식으로 기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모듈러주택의 조성을 촉진하고자 함. 끝으로 법적 용어인 '**공업화주택**'을 '**모듈러주택**'으로 변경해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하고 모듈러주택에 대한 대국민 인식전환을 도모하고자 함 (안 제51조 등)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상임(특별)위원회

구분		일시	내용
법사위	전체회의	10/2(수) 10:00	- 검사(박상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
과방위	정보통신방송 법안소위	9/30(월) 09:00	- 고유법 심사
	전체회의	9/30(월) 11:00	- 법안 심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청부민원과 공익 신고자 탄압 등에 대한 진상규명 청문회
농해수위	전체회의	9/30(월) 09:30	-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
환노위	전체회의	9/30(월) 10:00	-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등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토론회 및 세미나	9/30(월) 09:30	K-콘텐츠 무한 확장을 준비하는 한국 애니메이션 성장 정책	김승수 의원실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9/30(월) 10:00	페달 오조작 사고 방지장치 도입을 위한 토론회	민홍철 의원실 등	의원회관 1세미나실
	9/30(월) 10:00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된 알고리즘 위험성과 해결방안	김장겸·고동진 의원실 등	의원회관 3세미나실
	9/30(월) 10:00	RE100과 CFE 사이 정부의 에너지 정책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이재관·김성환 의원실	의원회관 2세미나실
	9/30(월) 13:00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노동자 안전실태 및 제도 개선 국회 토론회	정혜경·이학영 의원실 등	의원회관 6간담회의실
	9/30(월) 14:00	Post-플라스틱 국제협약 시대, 한국정부의 대응방안과 국회의 역할	김소화·주진우 의원실	의원회관 9간담회의실
	9/30(월) 14:00	제22대 국회 게임정책포럼 창립총회 및 초청 강연	김승수·조승래 의원실 등	의원회관 3세미나실
	9/30(월) 14:00	[제61차 미래소비자포럼] 제2차 제조물책임법 개정을 위한 국회 정책세미나	강민국·이인영 의원실 등	의원회관 5간담회의실
	9/30(월) 16:00	22대 국회의 지속가능발전 이니셔티브	정태호 의원실 등	의원회관 2소회의실
	10/2(수) 13:30	국산재 및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법령 개선 국회토론회	정희용 의원실 등	의원회관 2소회의실
	10/2(수) 14:00	국회 ESG 포럼 발족식 및 기념 토론회	민병덕·정희용 의원실 등	국회도서관 강당
	10/2(수) 14:00	가업상속공제 위험성 진단과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	오기형·김영환 의원실 등	의원회관 4간담회의실
	10/2(수) 14:00	[매입임대주택 정책 진단과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8.8 대책, 매입임대주택 무제한 매입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염태영·이연희 의원실 등	의원회관 7간담회의실
	10/4(금) 10:00	국회 바다와 미래 연구포럼 현안 토론회	조승환·주철현 의원실 등	의원회관 3세미나실
	10/4(금) 14:00	푸드테크산업법 제정 및 산업 활성화	김선교·이만희 의원실 등	의원회관 1소회의실

자료집 등	9/30(월)	「행정입법 분석·평가 기준과 실제」발간	국회사무처	
	9/30(월)	「The 현안」제29호 발간 AI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	국회도서관	
	10/2(수)	「금주의 서평」제697호 발간 - 도서명 : AI 시대의 정치이론 - 저자 : 마티아스 리스		
	10/2(수)	「World & Law」2024-17호 발간 - 늘어나는 빈집,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면?		
	10/4(금)	「팩트북」제112호 발간 - 주요국 국회의원직 한눈에 보기		
	9/30(월)	「2024 정기국회·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발간	국회예산정책처	
	9/30(월)	「국가미래전략 Insight」제109호 발간	국회미래연구원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53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자료집 등	9/23(월)	「The 현안」제28호 - 주요국 의회 지도부	국회도서관	
	9/25(수)	「금주의 서평」제696호 - 도서명 : 폭염 살인 - 저자 : 제프 구델		
	9/25(수)	「Data & Law」2024-10호 - 데이터로 보는 전기자동차		
	9/26(목)	「법안비용추계 이해와 실제」	국회예산정책처	
	9/27(금)	「NABO 재정경제통계 Brief 6호」		
	9/23(월)	「국가미래전략 Insight」제107호 - 표제 : 정치 양극화의 실태와 개선방안	국회미래연구원	
	9/26(목)	「국가미래전략 Insight」제108호 - 표제 : 대학 융합교육 지원 정책 분석 및 개선 방향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09.23~09.29)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	분야	내용
9/26(목)	ESG	생물다양성 뉴스레터 - 3. TNFD 공시 현황 및 사례: 국내 기업의 생물다양성 관련 핵심 준비 사항
9/26(목)	에너지·자원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서의 전력 직접거래 등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
9/27(금)	ESG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준비 - 7. 한국거래소, 코리아 밸류업 지수 발표
9/27(금)	금융	은행 및 금융지주 금융규제 주간 브리핑 - Vol.3 (2024년 9월 3,4째주)

입법전략자문그룹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그룹(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Group)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문서) 및 이를 이용하여 편집한 내용은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없으며,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세종과 미리 상의하여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백대용 | 변호사

[프로필보기](#)



장대섭 | 고문

[프로필보기](#)



김광재 | 변호사

[프로필보기](#)



김성범 | 변호사

[프로필보기](#)



안현정 | 변호사

[프로필보기](#)



방세희 | 변호사

[프로필보기](#)



성재열 | 변호사

[프로필보기](#)



조성환 | 변호사

[프로필보기](#)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